

北韓家族制度의 變遷

崔 弘 基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 次>.....	
I. 序 論	IV. 家族의 安定化
II. 北韓에서의 家族의 概念	V. 家族의 強化
III. 家族의 變革	VI. 結 語

I. 序 論

北韓도 다른 社會主義社會와 마찬가지로 그 家族制度의 原理와 理念의 바탕을 唯物論의in 見解에 두고 있다. 따라서 唯物史觀의in 理論은 北韓家族制度를 解釋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準據를 提供한다. 唯物史觀에 立脚한 古典의in 家族理論에 있어서는 家族은 勞動과 함께 一定한 社會의 制度의 發展을 制約하는 「歷史에 있어서의 窮極의 決定的 契機」로 간주되고 있다. 즉, 勞動은 生活資料의 生產이며 家族은 人間自身의 生產으로서, 이 두 가지 種類의 生產의 發展段階에 依해서 다른 諸社會制度가 制約된다는 것이다.⁽¹⁾ 여기에서 우리는 唯物史觀의in 理論에 있어서의 社會制度로서의 家族의 位置의 重要性을 把握할 수 있다. 北韓을 包含한 모든 社會主義社會에서 그 體制를 改編하는데 있어서 經濟制度와 함께 家族制度를 社會主義의으로 變革發展시키는데 가장 基礎的인 關心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脈絡에서 理解하여야 한다.

그러나 解放後 北韓이 그 家族制度를 社會主義의으로 變革하는 데 있어서 그 原理와 理念의 基礎로 삼은 古典의in 唯物史觀의 理論은 社會主義의 家族制度에 關해서 具體的인 어떤 모델을 提示하지는 않고 있다. 즉, 社會主義社會의 家族理論에 關한 典型的 古典으로 取扱되고 있는 「家族, 私有財產 및 國家의 起源」에서 Engels는 家族制度의 歷史의 發展을 論하고 특히 資本主義社會의 家族制度를 批判하면서도 「生産手段이 社會의 財產으로 轉化」되는 社

(1) F. Engels,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 und des Staats*, 金相灝譯, 1947, p. 2.

會主義社會의 家族에 關해서는 단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즉, 「單婚家族은 社會의 經濟的 單位이기를 中止」하며, 「私的 家政은 한 社會의 產業으로 變」하며, 「子女의 養育 및 教育은 公務가 되며, 社會는 嫡子와 私生兒를 莫論하고 모든 子女에 對해서 平等하게 配慮한다.」⁽²⁾ 또 「兩性關係의 秩序」에 있어서는 財產關係로부터 發生한 「男便의 優位性」과 「婚姻解消不能」이라는 두 가지 條件이 脱落한다고 論하고 있다.⁽³⁾ 이와 같이 「資本制生產이 廢棄된 後의 家族에 關해서 그가 「推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消極的 種類의 것이며 大概는 脱落될 것에 局限」하고, 그 外 새로 附加될 積極的 側面에 關해서는 「한 세로운 世代가……成長할 때에 決定될 것」이며, 「그들 自身의 實踐과 그에 相應하는 바 各 個人的 實踐에 關한 確固한 輿論을 스스로 造成할 것이며——그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⁴⁾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이 그 家族制度를 社會主義의으로 變革하는 데 先進社會主義社會인 소련의 家族制度가 社會主義의 家族制度의 具體的인 모델로서 영향을 미쳤다.⁽⁵⁾ 그러므로 極히 制限된 斷片의인 資料에 依해서 北韓家族制度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소련 家族制度가 또한 重要한 準據들을 提供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소련 家族制度는 唯物史觀의인 理論에 그 기초를 두면서도 그 歷史的인 傳統의 特性 때문에 소위 러시아의인 對應方策을 取하였으며, 또 그 政策的 方向을 設定하고 手段을 講究하는 데 있어서도 그 社會經濟的인 狀況에 對한 現實的인 考慮가 恒常 깊이 關聯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北韓家族制度도 그와 같은 意味에서 唯物史觀의인 理論에 그 基礎를 두고 또 소련 家族制度를 모델로 하면서도 그 歷史的인 傳統 및 社會經濟的인 發展과 關聯하여 獨自의인 對應과 發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研究는 解放後 北韓家族制度가 그 歷史的인 傳統과 社會經濟의인 狀況속에서 어떻게 對應 發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主要課題로 삼는다. 그러나 北韓家族制度의 變化를 考察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까지의 北韓社會에 關한 大部分의 研究와 같이 그 變化되고 있는 側面과 樣

(2) 同書, p. 98.

(3) 同書, p. 107.

(4) 同書, p. 108.

(5) 北韓은 初期에 있어서는 家族制度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소련으로부터 배우자」고 하는 것이 行動指針이었다.

相반을 보지 않고, 그러한 變化 속에 持續되고 있는 傳統的인 制度와 文化的連續性을 함께 究明해 보고자 한다. 그 어떠한 制度나 活動은 結局 狀況에의 對應過程으로서 展開되지만, 그러한 對應過程에는 傳統的인 制度와 規範에의 適應乃至 同化過程이 內包되어 있으며, 傳統은 그러한 過程을 通해서 持續되기 마련이다. 北韓社會도 國家權力を 通해서 家族의 社會主義의인 變革을 推進하는 政策에 있어서 過去와 全的으로 斷絕하지 못하고, 傳統의 規範 및 價值와 同化乃至 再統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떤 分野에서는 決定의이고 基本의인 變化를 하면서도 다른 分野에서는 傳統의 價值와 規範이 許容되고, 때로는 無意識의으로 強化도 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家族制度를 그 變化되고 있는 側面과 함께 그 傳統의 連續性을 보는데에는 또 傳統의 基盤을 같이 하는 우리 家族制度와의 差異性和 共通性을 밝히고자 하는 意味도 內包되어 있다. 그러므로 北韓家族制度의 變化過程을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 家族制度를 또 하나의 準據를 삼는다.

傳統의 持續은 北韓의 家族政策의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現實의 活動의 展開에서도 進行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理論의으로 推測할 수 있다.勿論 다른 어느 社會에서보다도 北韓社會에서 그 強力한 國家權力이 推進하는 政策이 社會構造와 價值에 더 强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政策도 具體의으로는 社會의 一般 成員들의 反應으로서 現實化되며, 傳統의 價值와 規範이 그러한 成員들의 反應에 또한 作用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로부터의 政策이나 價值志向과 關係없이 成員들의 具體의 活動의 展開에서 傳統의 價值와 規範은 持續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長期의으로 보면 그러한 現實의 展開에 依해서 國家의 政策 自體가 또한 영향을 받고 바뀌어지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그러한 政策의 現實의 展開에 關한 直接의 資料를 우리는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現時點에서 우리는 北韓家族制度의 變遷을 主로 그들의 公式的 政策과 見解를 中心으로 하여 分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北韓家族制度의 變化를 把握하는데 있어서 勿論 많은 限界를 지니게 된다. 특히 都市와 農村地域間, 또는 階層間의 差異等에 關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公式的 政策과 見解를 通해서 北韓家族制度의 變化의 傾向과 特性을 暫定의으로 究明하기로 한다. 다만 마지막에 가서 그러한 變化의 傾向과 特性을 通해서

우리는 間接的으로 北韓家族制度의 現實的인 變化에 關해서 理論的으로 追究하여 보고자 한다.

北韓家族制度의 變化를 考察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取한 또 하나의 立場은 家族制度의 變化를 그 社會經濟的인 發展過程과 恒常 關聯시켜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唯物史觀에 立脚한 社會主義의 家族制度를 實現하는 것이 勿論 北韓體制의 窮極의 目標이다. 그러나 그러한 目標를 實現하기 為한 政策과 手段은 언제나 그 現實的인 社會經濟的 狀況에 對한 考慮와 깊이 關聯되어 있다. 따라서 그 社會經濟的인 進展과 關聯시켜서 考察함으로써 北韓家族制度의 變化的 意味를 보다 잘 理解할 수 있고, 나아가서 앞으로 그 社會體制의 進展에 따른 家族制度의 變化를 보다 正確하게 展望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北韓家族制度의 現實的인 展開에 關해서直接的인 資料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現在의 狀況에서 그 現實的인 活動의 展開를 推論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接近方法은 또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北韓에서의 家族의 概念

北韓家族制度의 變化에 關한 이 研究 自體가 窮極的으로는 北韓의 家族制度를 理解하는 데 그 重要한 意義가 있다. 그러므로 北韓에서의 家族의 概念도 이 研究의 마지막 段階에 가서 論하는 것이 正常的인 順序일 것이다. 그러나 北韓家族制度의 變化를 살펴보기 前에 우리는 먼저 北韓이 理念으로 삼고 있는 家族의 概念을 理解할 必要를 느낀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社會는 그 家族制度의 原理와 理念을 唯物史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傳統的인 段階나 오늘날의 우리 社會와는 基本的으로 다른 家族의 概念을 가지고 있다. 즉, 家族의 經濟的 所有를 社會의 共有로, 私的 家事를 社會의 產業으로, 子女의 養育과 教育을 社會의 公務로 하고, 또 兩性關係를 平等的 關係로 하는 것을 理念으로 하는 北韓社會는 家族의 構成, 關係 및 機能等에 關해서 우리 社會와는 다른 概念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社會가 그 理念으로 삼고 있는 家族의 構成, 關係 및 機能等에 關한 概念을 먼저 理解하지 않으면 制度로서의 北韓家族의 變化를 올바르게 理解할 수가 없다. 北韓社會의 家族에 關한 보다 具體的인 概念은 이 研究過程에서

차차 밝혀지겠지만, 唯物史觀에 바탕을 두는 그들의 原理的인 概念을 여기서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唯物論의 見解에 따르면 家族은 人間自身의 生產에 關한 制度이다. 즉, 家族은 生物學의 이면서 同時에 社會的인 制度로 把握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北韓社會에서도 家族을 「結婚과 핏줄에 기초하여 가깝게 연결되고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단」⁽⁶⁾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들의 說明에 依하면 「男女가 결혼에 기초하여 부부로 되면서 가족이 이루어지게」되며, 「부모들의 핏줄을 잇게 되는 자녀들이 들어나게 됨에 따라, 가족의 범위는 확대되게 된다」. 즉, 結婚을 家族構成의 「出發的 契機」로 보고, 血緣을 家族組織의 「擴大的 契機」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出發的 契機와 擴大的 契機에 依해서 構成 組織되는 家族의 範圍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족은 수백 수천 갈래로 복잡하게 갈라져 나가는 혈연관계 일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에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家族構成의 範圍를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一段 制限하고, 「혈연관계가 비교적 먼 사람들의 집단」은 「친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혼에 의하여……결합된 부부가 가족을 이루는 기본성원」으로 보고, 「핏줄을 잇게 되는」「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의 직계혈족은 물론, 같은 선조에서 출생한 방계혈족들(형제자매, 숙부와 조카 등)도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勿論 「이를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을 理念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祖父母와 孫子女등의 直系血族은勿論, 같은 先祖에서 出生한 傍系血族들」까지 家族構成에 包含되는 것으로 보고, 그 傍系血族으로서 兄弟姊妹, 叔父와 조카等을 例示하고 있다. 이 傍系血族들은 그 配偶者를 包含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家族은 擴大家族型은 아니며, 우리의 傳統的 家族制度에서 理念으로 삼던 直系家族型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核家族的 形態를 家族構成의 理念型으로서 漸次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社會와는 달리 傳統의 家族의 理念이 家族構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家族構成의 契機는 傳統的인 社會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 즉, 傳統的인 家族制度에서는 家族을 構成하는 契機를 婚姻外에는

(6) 『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74), p. 226. 「가족」란. 以下 本節에서 家族의 概念에 關해서 註없이 引用한 것은 모두 위 「가족」란에서 나왔다.

어디까지나 血緣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北韓家族制度에서는 그것을 社會의 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핏줄을 가깝게 잇고 있는 사람들도 이 러저러한 사회적 요인으로 하여」「한 가족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춘수가 비교적 먼 사람들은 지어는 혈연적 유대가 전혀 없는 남과 남사이로 생활자체가 그들의 가족적 결합을 절박하게 요구한다면 한 가족을 이루 수 있다. 립양에 의하여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미성년아동들은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양자도 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친자녀와 친부모사이와 꼭 같은 법률관계가 설정되고 가족적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즉, 家族은 社會의 인 條件에 依해서構成되는制度로서 血緣이 그 家族을構成하는必然的契機도 必須의 契機도 아니라는 것을 意味한다. 그렇게 되면 北韓의 家族構成의範圍에 祖父母와 孫子女等 直系血族과 兄弟姊妹, 叔父와 조카 等 傍系血族을 包含하고 있는 것은傳統的家族의 理念의 영향도 그곳에 作用하고 있겠지만, 그들이 自主의 生活을 할 수 없을 境遇에 家族集團이 그들을 扶養해야 한다는 社會의 必要性을 含蓄의으로 表現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社會에서 家族을構成하는範圍에 關해서 그以上 더 明確한 어떤 理念을 提示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家族을構成하는契機와 함께 家族을構成하는範圍自體가 그리 重要的問題가 아니라는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社會에서 家族을構成하는契機가 重要的問題가 아니라는 것은 血緣이 家族을構成하는必然的 또는 必須의 契機가 아닌 것으로 理解하고 있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가족이 사람들의 순수 자연적 유대만을 반영하는 생물학적 법주」가 아니라, 「혈연적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조직의 한 형태이며, 그들이 맺고 들어서게 되는 사회경제적, 법률적, 인격적 및 기타 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법주」라고 理解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경제생활상으로나 도덕적으로 굳어졌거나 법률적으로 튼튼히 고착된 행동준칙과 규범이 있으며, 그들이 서로 지니고 있는 권리, 의무관계가 있다」고 說明하고 「가족의 조직 구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가족관계에 들어서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라고 強調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血緣이 家族을構成하는一般的契機로서 無視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家族은 「생물학적 법칙성에 전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자연현상이 아님」 하나의 社會組織形態이며, 따라서 家族構成에서

보다 重要한 것은 그 社會關係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家族의 血緣的인 契機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道德的인 規範을 主로 強調하던 傳統的인 家族概念보다도 오히려 家族을 主로 類型化된 權利 義務關係 즉, 役割關係의 그물로 짜여진 集團으로 把握하는 社會學의 立場과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北韓社會에서 強調하는 家族의 「特定한 社會的 關係」의 模型은 어 떠한 것일까?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들은 家族關係의 重要한 基盤을 社會經濟的, 法律的 및 人格的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基盤 위에 展開되는 全體的인 家族關係에서 가장 中心이 되는 것은 親子關係가 아닌 夫婦關係로 생각되고 있다. 夫婦를 家族의 「出發의 契機」로 보고, 또 夫婦를 「家族의 基本成員」이라고 한 테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그리하여 血緣을 家族關係를 構成하는 決定的인 基盤으로 생각하고 또 夫婦關係가 아닌 親子關係를 家族關係의 中心으로서 家系을 重視하던 傳統的 家族制度와는 전혀 다 르다. 家族關係에서 또 重要한 特徵은 個別的인 關係로서의 夫婦間의 平等的 關係이다. 社會主義的 社會理論에서는 兩性間의 關係는 平等이 그 理念이 되고 있으므로 夫婦間의 關係에서 平等이 強調되고 있음은 當然한 理致이다. 그러나 父母와 未成年子女와의 사이의 關係는 北韓에서는 主로 權利와 義務關係로 理解되고 있다. 그들에 依하면 「부모들은 자기의 미성년자녀들을 대 리할 權리와 그들을 잘 보살피며 책임적으로 교양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들의 미성년자녀들은 자기 부모들로부터 부양받을 權리를 가지며 그들에게 교양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家族成員間의 이러한 權利 義務關係는 그것이 단지 家族內에서의 그들 相互間의 權利 義務關係가 아니라, 「국 가와 사회 앞에 그들이 서로 지니게 되는 權리 의무관계」라고 理解하고 있다.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는 혁명 적인 결혼 및 가족관계」의 확립이 強調되는 것도 이러한 論理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論理는 또 北韓社會에서의 家族의 機能에 關한 概念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家族의 機能에 關한 概念을 살펴 보기로 하자.

北韓社會의 家族의 機能에 關한 概念은 家族의 經濟的 所有를 社會의 共有로, 私的 家事를 社會의 產業으로, 子女의 養育과 教育을 社會의 公務로 한다는 社會主義的인 家族制度의 理念에서부터 直接的인 영향을 받고 있다. 傳統的인 家族制度가 가진 이러한 機能이 다른 社會制度에 移讓되는 것과 關

聯하여 家族機能의 調整이 不可避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北韓家族이 갖는 機能으로서 가장 重要한 것은 무엇보다도 子女의 出產이다. 「엥겔스」가 家族을 基本的으로 「人間自身의 生產」에 關한 制度로 規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社會主義社會에서도 子女出產의 機能을 家族으로부터 分離하려는 試圖는 아직 없다. 北韓에서도 그러한 機能에 關해서 言及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부모의 핏줄을 잊게 되는 자녀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고 云云한 것은 그것을 가족의 當然한 機能으로 認定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리하여 北韓은 體制의in 必要에 따라서 子女의 出產을 勸獎하기도 하고 또 制限하려고 試圖하기도 하고 있다.

둘째의 家族의 機能은 社會에 移讓된 從來의 家族의 機能을 擔當할 勞動力を 社會에 供給하는 것이다. 北韓이 強調하고 있는 「家庭의 勞動階級化」란 모든 可用勞動力を 家族으로부터 社會에 끌어내는 것이 그 主要한 目標이며, 또 그들이 取하고 있는 低賃金政策은 그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為한 主要한 手段임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北韓이 家族의 主要한 機能으로 삼고 있는 셋째 것은 子女의 養育과 教育이다. 子女의 養育과 教育을 社會의in 公務로 하는 것을 理念으로 하면서도 그들은 「社會主義의in 교양교육」을 하는 것은 父母의 義務로, 또 받는 것을 子女의 義務로 規定하고 있다. 그것은 社會主義의in 價值教育의 目標達成을 為해서 家庭家育이 必須不可缺한 手段임을 認定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것을 金日成은 「사람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처음에 가정교양으로부터 시작되고 학교교육을 거쳐서 그 기초가 닦아지는 것이며 사회교육을 통해서 계속 완성됩니다.」⁽⁷⁾고 表現하고 있다.

家族의 마지막 主要한 機能은 經濟의in 共同生活이다. 家族의 經濟的 所有를 社會的 共有로 轉換하는 것을 理念으로 하면서도 그들은 經濟的 共同生活을 家族關係의 重要한 基盤으로 認定하고 있음을 이미 앞에서 言及하였다. 그리하여 北韓은 經濟的으로 自立할 수 없는 老幼廢疾者의 扶養을 家族의 義務로까지 規定하고 있다.

以上 北韓에서의 家族의 機能에 關한 概念을 通해서 北韓에서는 家族의 機能을 그 社會體制의 要求와 關聯하여 把握하고 있음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家族成員間의 權利 義務關係도 단지 그들 相互間의 私的in 權

(7) 『金日成著作選集』(日文), 3卷, p. 42.

利, 義務 關係가 아니라 社會에 對한 義務關係를 보다 重要한 것으로 理解하고 있는 것도 北韓에서의 家族의 機能에 關한 概念과 關聯되고 있음을 理解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北韓의 家族에 關한 그러한 概念은 더 거슬러 追求하면, 家族과 全體 社會體制와의 關係에 對한 社會主義的인 理論과 關聯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社會體制와 家族과의 關係에 對한 北韓의 概念을 살펴 보기로 한다.

「엥겔스」가 經濟的인 生產制度인 勞動과 함께 家族을 歷史的 發展에 있어 서 窮極의 決定的 契機로 보고 있음은 이미 言及하였다. 즉, 그는 經濟制度와 함께 家族制度를 歷史의 發展을 制約하는 下部構造로 理解하였다. 그러나 같은 著書의 다른 部分에 가서 그는 또 다른 立場을 보이고 있다. 그는 一夫一婦制의 起源을 說明하면서, 「그것은…… 經濟的 諸條件위에 즉, 原始的인 自然發生的 共有制에 對한 私有制의 勝利 위에 構築된 最初의 家族形態」⁽⁸⁾라고 論함으로써 家族制度를 經濟的 下部構造 위에 構築된 上部構造로 理解하고 있다. 家族이 社會의 下部構造에 屬하는가 或은 上部構造에 屬하는가 하는 데 對한 「엥겔스」의 이와 같은 曖昧한 立場이 社會主義的인 家族制度의 實現을 最初로 試圖한 소련社會에서 家族의 理念의 位置와 政策에 關해서 動搖를 겪게 만드는 重要한 한 原因이 되었다.⁽⁹⁾ 그럼에도 不拘하고 家族制度가 社會經濟制度의 變遷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하는 것이 소련 政府에서 取한 一貫된 立場이었다. 따라서 社會經濟制度의 社會主義的인 改編과 家族制度의 變革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또 家族制度는 社會經濟制度와 함께 처음부터 公的인 政策의 對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家族과 社會經濟的 制度와의 關係에 對한 즉, 全體社會에서의 家族의 理念의 位置에 關한 模糊한 立場은 北韓에도 그대로 繼承되고 있다. 즉, 「가족은 사회경제托대에도 상부구조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사회현상이지만, 생산 방식의 발전, 사회경제제도의 변천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였다」⁽¹⁰⁾고 하는 것이 北韓의 公式立場이다. 즉, 家族은 下部構造에도 上部構造에도 屬하지 않는 「特殊한 社會現象」으로 認識하면서도, 「社會經濟制度의 變遷」에 따라서 끊임없이 變遷 發展하는 것으로 如前히 애매한 立場을 보이고 있다.

(8) Engels, 上揭書, p. 83.

(9) Urie Bronfenbrenner, "The Changing Soviet Family," in *Nuclear Family in Crisis*, (ed.) by Michael Gordon, p. 120, Note A 參照.

(10) 『백과사전』, 1, 1974, p. 226.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家族이 社會의 存在와 發展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的單位로 北韓에서는 認識되고 있다. 즉, 그들은 「세포가 생명활동의 기충단위이며 세포에서 생명의 기본적인 과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가정⁽¹¹⁾은 인간생활의 기충단위이며 가정에서 사회생활의 기본적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고, 「세포가 건전해야 전일체로서의 유기체도 건전하듯이, 가정이 건전해야 전체로서의 사회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¹²⁾고 論하고 있다. 여기에서 家族이 社會經濟制度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을 뿐 아니라 社會의 存在와 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는 「人間生活의 基層單位」로 北韓이 認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公的政策의 對象으로서 家族에 對해서 北韓當局이 一貫해서 깊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認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北韓의 家族政策은 家族 그 自體를 爲해서 보다 어디까지나 社會主義社會의 實現과 發展이라는 目標와 關聯된 것이다.

그러나 北韓社會에서 그 體制가 理念으로 삼고 있는 위와 같은 家族의 概念에 따라서 家族政策을 推進하는 데 있어서 그 社會經濟的인 進展狀況과 關聯하여 政策의 內容과 手段이 決定되고 있다. 家族은 「생산방식의 발전, 사회경제제도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立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解放後 北韓의 家族政策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에 우리는 北韓家族制度의 變化를 세 段階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I. 家族의 變革

第一段階은 1945年부터 1953년까지의 期間이다. 이 段階는 全般的인 社會體制를 社會主義的인 體制로 改編하기 爲한 準備着手期間으로서 社會經濟制度의 變革과 함께 家族制度의 變革을 推進한 時期이다.

解放後 北韓當局은 먼저 勞動黨(45.10月)과 臨時人民委員會(46.2月)를 組織하여 政治制度의 骨格을 形成하고, 곧 이어서 「土地改革에 關한 法令」(46.3月), 「農業現物稅法令」(46.6月) 「勞動者 및 事務員에 關한 勞動法令」(46.6

(11) 北韓에서는 「가족들이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조직운영하는 단위」를 「가정」으로 表现하고 그 家庭을 「社會의 細胞」라고 비유하고 있다(『백과사전』, 2, 1975, p.210, 「가정」란)

(12) 上揭書, pp. 209-210.

月) 및 「重要產業國有化에 關한 法令」(46.8月)等 社會主義的인 體制에로 經濟制度를 改編하기 為한 一連의 法令을 制定 公布하는 것을 前後하여 家族制度의 變革을 為한 措置를 착수하였다. 즉, 社會主義的인 社會體制에로의 改編을 為한 基礎的 措置로서 經濟制度와 家族制度의 變革을 함께 推進하였던 것이다. 이 段階에서의 經濟制度의 變革은 農業과 商工業等 主要 生產手段의 社會化를 為한 準備措置이었으며 그러한 生產手段의 社會化를 뒷받침하고, 政治的 支持基盤을 擴大하기 為해서는 男女平等權의 認定이 必要하였다. 즉, 女性으로 하여금 「經濟 文化的, 社會 政治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¹³⁾ 「全面的으로 參與시키기」⁽¹⁴⁾ 為해서 男子와 同等한 平等權의 認定이 必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이 46年 7月에 公布되었다. 男女平等의 實現을 為해서는 家族制度의 變革이 本質的인 것인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 依하면 封建的 家族關係와 資本主義의 家族關係는 다같이 男女不平等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 즉, 「封建的 家族關係는 經濟的 예속 뿐 아니라 經濟外的 예속, 身分的 예속에도 기초」를 두고서 「夫婦平等 家族들 사이의 同等한 權利와 自由가 正面으로 노골적으로 否定」되고, 資本主義의 家族關係는 封建的 家族制度에 「씌워 놓은 身分的 外皮를 벗」고 「순수 금전관계로 전환」되어 거기에서 論議되고 있는 平等과 自由는 形式에 不過하고, 「절두절미 男女不平等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¹⁵⁾ 그러므로 家族内外에서의 女性의 平等權을 保障하기 為해서 同法令에서는 男子와 同等한 「選舉 및 被選舉權」(同法令第 2 條) 「同等의 勞動權利와 同一한 賃金과 社會保險 및 教育의 權利」(同法令第 3 條) 와 함께 家族關係에서의 平等權을 여러가지 規定하고 있다. 이제 그 主要한 것을 摘記하여 보면 「自由結婚의 權利」(同法令第 4 條), 「自由離婚의 權利」(同法令第 5 條), 「同等의 財產 및 土地相續權」(同法令第 8 條)의 設定과 一夫多妻制 및 妻妾賣買의 禁止規定(同法令第 7 條), 結婚年齡의 規定(女性 만 17 歲, 男性 만 18 歲)(同法令第 6 條)等이다.

이것들은 모두 傳統的인 家族制度와 關聯된 不平等關係를 清算하고 平等에 立脚한 새로운 家族關係를樹立하기 為한 措置이지만, 그 中에서도 重要한 것은 財產에 關한 것과 婚姻에 關한 것이다. 家族에서의 男女間의 不平

(13)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 제 1 條.

(14) 同法令 前文.

(15) 『백과사전』, 1, p. 227.

等의 根源은 낡은 財產所有制度에 있다고 理解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措置에서는 同等한 財產의 所有, 管理 및 相續權을 認定하고 또 「結婚生活中에 夫婦가 소득한 財產은 夫婦의 共同所有」로 規定하였다(同法令施行細則第4~7條)。

結婚과 離婚의 自由는 兩性의 平等的 關係의 바탕이 되므로 「엥겔스」의 理論과 初期 소련 家族政策에 있어서 다같이 無條件의인 權利로 認定되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結婚과 離婚의 無條件의인 自由가 認定되지 않고 있는 것이 主要한 特徵의 하나이다. 于先 結婚에 있어서는 「結婚書」를 所管 人民委員會에 提出 受理됨으로서 成立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同施行細則第8條) 그리하여 法的 婚姻만을 認定하고, 初期 소련社會와는 달리 登錄되지 않은 事實婚은 法的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¹⁶⁾ 이것은 단지 結婚의 自由에 對한 制約을 意味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즉 法的 婚姻만을 認定하게 되면 事實婚에서 出生한 女子는 結局 非嫡出이라는 身分을 實質的으로 갖게 됨을 意味하며, 그것은 嫡出과 非嫡出의 區分을 없애려고 하는 社會主義의in 家族制度의 理念과 어긋나는 것이다.

離婚에 있어서는 「夫婦關係를 더 계속할 수 없을 때에」「協議離婚書」를 提出하여 受理됨으로서 離婚이 認定되고 있지만(同施行細則第10條), 協議離婚이 成立치 않을 때는 裁判에 依存하게 되며(同施行細則第11條), 그 裁判離婚에서는 여러 가지 制約이 加해지고 있다. 즉, 離婚訴訟을 提起하게 된 原因이 一時의 感情에 起因한다고 생각될 때는 3個月~6個月의 和解期間을 두고(同施行細則第13條), 또 2回以上 離婚하려는 者의 離婚訴訟은 道裁判所에서 다루며 5千원이라는 禁止의인 訴訟提起費用을 徵收하도록 되어 있다(同施行細則第17條). 그뿐 아니라 離婚하였을 때에는 子女가 만 18歳에 이르기 까지 그를 養育하는 者가 다른쪽에 對해서 子女養育費(1人일 때에는 收入의 20%, 2人일 때에는 35%, 3人일 때에는 50%)를 請求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同施行細則第20條). 그리하여 離婚의 無條件의인 自由라는 社會主義 家族의 理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北韓社會에서의 婚姻과 離婚에 對한 그러한 制限措置는 또 初期 소련社會

(16) 그러나 53年에 가서는 事實上 夫婦生活을 하던 配偶者中 人民軍, 빨치산, 政治工作員으로 活動하다가 한 사람이 死亡한 경우에는 生存配偶者에게 法律婚의 夫婦와 同一한 權利義務를 認定하는 措置를 取하고 있다. (朴秉濬, “南北韓家族法의 比較 및 問題點과 對策에 關한 研究”, 1972, p. 36.)

의 家族政策의 內容과도 커다란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1930年代에 들어가서 소련이 保守的인 方向으로 修正한 家族政策의 內容과 아주 怡似하다.⁽¹⁷⁾ 즉, 初期 소련 社會에서는 登錄되지 않은 事實婚에 對해서도 登錄된 婚姻과 같은 法的 地位가 附與되고 따라서 嫡出아닌 子女에게도 合法의인 婚姻에서 出生한 子女와 同等한 地位가 認定되었다. 또 離婚에 있어서는 離婚을 願하는 者가 相對方의 配偶者에게 通告할 必要도 없이 다만 婚姻을 登錄한 事務所 (ZAGS)에 申請만 하면 離婚이 許可되었다(所謂 葉書離婚制라는 것이다). 그러나 初期의 그러한 急進의 家族政策이豫期치 않았던 家族紐帶의 弱化를 招來하여 그것이 社會의 安定에 危脅의인 要因으로 判斷됨으로서 1930年代 中葉에 婚姻과 離婚을 보다 嚴格하게 規制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婚姻에 있어서는 登錄된 婚姻만이 그 法的 効力이 認定되고, 父性의 認知訴追를 不法化함으로서 已前에 廢止되었던 非嫡出이라는 身分이 다시 생기게 되었다. 또 離婚에 있어서는 그 葉書離婚制를 廢止하여 兩當事者の ZAGS에의 出頭를 要求하였을 뿐 아니라 離婚回數에 따라서 累進의으로 罰金을 徵收하고, 또 子女數에 따라서 累進의으로 養育費를 被告가 負擔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北韓社會에서 처음부터 婚姻과 離婚의 無條件의in自由를 許容하지 않고, 여러가지 制限의in 措置를 加한 것은 初期 소련社會의 그러한 經驗이 教訓으로서 크게 作用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傳統의in 家族制度의 價值와 規範도 그러한 家族政策에 또한 作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新로운 家族政策은 傳統의in 家族制度에서의 不平等의in 夫婦關係의 清算을 追求하면서도 家族의 安定을 通한 體制의 安定이라는 欲求앞에서 傳統의in 婚姻制度의 規範과 價值를 그대로 保全하는 것이 必要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段階에서 北韓이 家族制度의 變革과 關聯하여 取한 重要한 措置는 新로운 公民證制度를 採擇하고 舊戶籍制度를 廢止한 것이다.⁽¹⁸⁾ 姓氏의 本貫과 父系血緣關係를 明記하는 舊戶籍制度는 우리의 傳統의in 家族制度의

(17) 소련社會의 家族政策에 關해서는 北韓研究所刊『北韓社會論』의 崔弘基, “北韓의 家族制度”中 第1節 參照.

(18) 公民證에 關한 決定書(46年 8月), 北朝鮮內 公民證交付 實施에 關한 細則(46.8月) 公民證交付事務規則(47年 3月) 公民證에 關한 規定(47.2月), 公民證交換 및 身分登録制度 實施에 關한 決定書(48年) 等의 公布가 그와 關聯된 一連의 措置이다.

理念을 保存하는 하나의 重要한 手段이었기 때문에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變革하기 爲해서 그 戶籍制度의 廢止가 要求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戶籍制度는 兩性의 不平等에 立脚한 家族構成原理에 따라서 그 記載에 있어서 父系血緣關係가 一次的인 것으로 取扱되고 夫婦關係는 오히려 二次的으로 取扱되어 있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結婚을 家族構成의 「出發的 契機」로 따라서 夫婦를 家族의 「基本成員」으로 봄으로써 家族關係에서 夫婦關係가 一次的 關係로 取扱되고 兩性間의 關係는 平等을 理念으로 한다. 또 戶籍制는 傳統的인 家族主義, 親族主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그러한 家族主義, 親族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門閥主義는 「종파를 낳는 온상」으로서 社會構造에서 不平等의 根源이 될 뿐 아니라 社會體制의 統合에 障碍的 要因으로理解한다. 따라서 家族構造와 社會構造에서의 兩性의 不平等을 清算하고 社會的 統合을 推進하기 爲해서 北韓은 戶籍制의 廢止를 必須的인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平等에 立脚한 夫婦關係를 家族關係에서 一次的인 關係로 하는 政策은 北韓이 採擇한 養子制에서도 反映되고 있다. 즉, 北韓에서는 첫째 异姓養子가 可能하며 또 夫婦가 共同으로 養子를 들이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寡婦 또는 妻 단독으로도 養子를 들일 수 있으며 그 경우에 養子는 그 養親의 姓을 따르게 하는 것이 原則이 되고 있다. 養子의 立養은 또 未成年者에 限하고 그 生父母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10歲以上인 경우에는 本人의 承諾을 必要要件으로 하고 있다. 또 入養된 養子와 養親間에는 親生子間과 같은 關係가 發生하며 養子와 親子女間에 差別이 없으며, 養子關係가 그 養子의 利益을 爲해서 바람직하지 못할 때에는 龍養이 認定되고 있다. 그리하여 北韓의 養子制度에서는 立養하는 夫婦兩性에게 同等한 權利가 認定되고 또 姓不變이라는 傳統的인 原則이 除去되었다. 더 重要的 것은 養子制가 父系을 中心으로 하는 家系繼承을 爲한 制度로서의 傳統的인 意義를 衰失하고 「養子된 者의 利益과 함께 養親의 利益」을 保障하는 社會政策的 制度로 그 意義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死後養子」, 「婿養子」, 「遺言에 依한 養子」制가 認定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러한 養子制의 意義의 變化와 關係가 있다.⁽¹⁹⁾

이 段階에서 北韓은 또 「子女의 養育 및 教育을 集團化하기 爲한 措置로서 「託兒所規則」도 制定 公布하고 있다(47年 6月). 女性勞動力を 社會的 產

(19) 北韓의 養子制에 關해서는 朴秉濂, 上揭論文, pp. 43-49, 「養子法」參照.

業으로 轉換하기 爲해서 「子女의 養育 및 教育」을 社會的 事業으로 둘리는 것 이 社會主義社會의 基本戰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로부를 위하여 유아를 맡아서 양육함을 목적으로」, 「生後 30日부터 만 3歲까지 보호하는」(規則 제 1조) 託兒所를 「各級 人民委員會, 公共團體, 企業所 또는 個人이 그 費用으로」設立할 수 있도록 하였다(規則 第 2條). 그러나 公的 義務로서 國家가 모든 子女를 養育하고 教育한다는 社會主義의 理念과는 키다란 距離가 있다.

그리하여 49年 2月에는 前記規則을 廢棄하고, 「託兒所에 關한 規定」을 다시 公布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生後 1個月 부터 만 3歲까지의 유아를 가진 勤勞女性으로 하여금 勤勞生產性을 제고시키고, 또한 政治社會 및 文化生活에 參加할 수 있도록 健全한 幼兒를 養育시키는 데 방조함을 目的으로」(規定 제 1조)「國家 및 社會團體에서」託兒所를 경영하도록 規定하고 있다(規定 제 2조). 여기에서는 勤勞女性의 「勤勞生產性을 제고시키」는 目的外에 「健全한 幼兒를 養育하는 것」이 또하나의 目的으로 追加되고 있으나, 아직 「國家 및 社會團體가 이를 경영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그 設立을 義務화하지 않고 있으며, 또 「都市에 設立」(規定 제 5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子女의 養育 및 教育」을 社會的 事業으로 하는 것을 그 理念으로 하면서도 그 社會化政策이 이러한 程度의 政策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北韓의 社會經濟의 進展狀況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段階는 北韓에서는 農業과 商工業의 集團化을 推進하는 準備的 段階로서 社會的 產業이 크게 進展하지 못하여 女性勞動力에 對한 需要가 크지 않고 또 子女의 養育과 教育의 社會化를 뒷받침 할 수 있는 經濟的 基盤이 弱했다는 現實的인 事情과 關係가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經濟的인 生活共同體로서의 家族의 機能은 어떻게 變革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北韓에서는 「가족들이 경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조직 운행하는 단위」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한家庭을 이루고 있는 家族成員들이 經濟的 生活을 共同으로 해야 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한 家族을 이루고 있지 않는 家族成員間에도 扶養의 義務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 主要內容을 보면⁽²⁰⁾ 첫째 夫婦間의 扶養은 다른 어떠한 家族間의 그것보다 優先하는 第 1 次的 義務로 되어 있

(20) 扶養義務關係에 對해서는 朴秉濬, 上揭論文, pp. 57-62, 「扶養」參照.

다. 둘째 子女에 對한 父母의 扶養義務는 無條件的인 것으로서 未成年(18歲未滿) 子女는 勿論, 勞動能力이 없고 獨自의인 生計를 維持할 財產이 없는 子女에 對해서 父母 雙方이 平等하게 扶養할 義務가 있다. 셋째 父母에 對한 子女의 扶養義務는 「實務的으로 確認」되어 있으며, 그 根據는 父母가 子女를 사랑하며 子女가 父母를 尊敬하고 奉養하는 것이 傳統的 美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 義務는 60歲以上의 父와 55歲以上의 母 및 勞動能力이 없고 獨自의으로 生計를 維持할 財產이 없는 父母에 對해서 發生하며, 그 경우에 出嫁女를 包含한 모든 子女가 同等하게 지게 되어 있다. 넷째, 兄弟姉妹間에도 夫婦間, 親子間의 그것 보다 2次的인 扶養義務가 있으며, 그것은 未成年 兄弟姉妹 및 勞動無能力 또는 生計를 獨自의으로 維持할 財產이 없는 경우에 適用된다. 다섯째, 祖父母와 孫子女間에도 各其 配偶者와 父母, 子女로부터 扶養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扶養은 2次的인 義務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祖父母와 孫子女間의 扶養義務關係를 父系 즉, 親祖父母一孫子女뿐 아니라, 母系 즉, 外祖父母一孫子女에게 差別을 두지 않고 適用하고 있다.

여기에서 特히 두 가지 事實에 注目을 하게 한다. 즉, 한 가정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도 兄弟姉妹間, 祖父母一孫子女間等 近親間까지에도 扶養義務를 지우고 있다는 것⁽²¹⁾과 그러한 義務가 兩系에 平等하게 지워지지 있다는 것이다. 後者は 兩性의 平等이라는 北韓의 理念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은 傳統的인 父系中心主義와 상치되고 있다. 그러면서 家族的인 扶養義務關係를 核家族을 벗어난 近親에까지 法的으로 擴大함으로서 그들의 말과 같이 「傳統的인 美風」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政策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段階에서의 北韓의 社會保障制의 限界를反映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여기에서 北韓家族政策이 社會經濟的인 進展狀況에 對한 現實的인 考慮에 바탕을 두고 또 必要한 경우에는 傳統的인 價值와 規範을 維持保存하고 있는 한例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어떻든 北韓家族은 많은 制度의 變革에도 不拘하고 經濟的인 共同生活이라는 傳統的인 家族의 機能에 있어서는 弱化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그뿐 아니라 法的으로는 規定되고 있지 않지만, 北韓은 從祖父母와 從孫子女間에도 祖孫間과 같은 關係가 認定되는 것으로 解釋하고, 또 叔姪間에도 그러한 扶養義務를 바탕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朴秉濂, 上揭論文, p. 62 參照).

以上에서 우리는 北韓의 家族制度와 關聯된 變革의 主要한 內容을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婚姻制度, 養子制度等의 改革에 依해서 그 家族關係는 兩性의 差別을 原理로 하는 傳統的인 父系中心制로부터 平等에 立脚한 夫婦中 心制로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그러한 平等의 原則은 家族의 機能과 關聯된 家族成員間의 扶養義務에서도 貫徹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한편 婚姻制度 特히 離婚制度에서는 家族의 安定이라는 傳統的인 價值가 維持되고 있고, 또 家族의 扶養義務關係에 있어서는 넓은 親族에 까지 法的으로 擴大하여 「傳統的인 美風」을 意識的으로 強調保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傳統的인 價值와 規範의 維持는 모두 그 社會經濟的인 狀況에 對한 現實的인 考慮와 깊이 關聯되어 있었다. 그러한 現實的인 考慮는 子女의 養育과 教育의 社會化政策에서도 뚜렷하게 作用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兩性의 平等이나 子女養育 및 教育의 社會化라는 理念이 追求되면서도 그것들은 獨自의인 價值로서보다 社會體制의 變革을 爲한手段으로서 잔주되고, 또 現實的인 考慮 앞에서 制約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社會에서 推進하던 家族政策은 變革을 追求하면서도 安定이라는 또 하나의 目標를 함께 追求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家族과 社會의 安定에 深刻한 問題를 隨伴하였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離婚率의 增加라고 생각된다. 1949年當時 婚姻 4件에 對해서 1件의 比率로 離婚이 盛行하였으며, 그것도 男子로부터의 離婚請求가 壓倒的으로 많았다고 한다.⁽²²⁾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에서의 女性保護라는 本來의 趣旨와는 反對로 女性에게 不幸을 助長하는 結果가 되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50~53年間의 戰亂과 그에 따른 社會經濟的인 危機的 狀況도 家族의 構造와 機能을 크게 弱化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6·25事變에 依해서 北韓에는 約 30~40萬에 達하는 戰爭未亡人이 發生했으며 그 보다 많은 越南者 家族의 婦人이 獨身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²³⁾이 于先 그 두드러진 徵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戰亂은 또 無數한 孤兒를 發生시켰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의 家族政策은 第2段階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2) 朴秉濂, 上揭論文, p.34. 離婚의 自由權은 소련과 中共社會에서도 初期에는 主로 男子에 依해서 利用되었다.

(23)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의 家庭과 婦女子』, 1972, 109.

IV. 家族의 安定化

北韓家族政策의 第 2 段階는 大體로 54年부터 60年까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段階에서는 北韓當局이 家族에 對한 規制를 더 强化하여 家族을 하나의 社會的인 基礎單位로서 安定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特色으로 나타나고 있다.

家族의 安定을 爲한 措置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婚姻과 離婚에 對한 規制의 强化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北韓은 55년의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에서 「결혼등록을 하려는 공민들은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거주지 신분등록소에 출두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결혼증을 교부받는 동시에 쌍방의 공민증에도 결혼사실이 등재되어야 한다」(同규정 제10조)고 婚姻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고 있다. 이러한 規制는 二重婚을規制하려는 目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보다도 實質的으로 婚姻을 體制의 立場에서 審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規制를 說明하여 北韓의 家族法學者 조일호는 「이 제도는 公民들의 결혼에 대한 우리 국가의 깊은 관심을 표현하며, ……희망스럽지 못하거나 해로운 결혼의 발생을 방지하는 국가적 작용을 보장하며, 개인적 결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승인의 형식⁽²⁴⁾」이라고 한다.

婚姻에 關한 規制로서 우리의 興味를 자아내는 것은 戰爭未亡人の 再婚에 關한 것이다. 즉 北韓은 内閣決定으로서 戰爭未亡人에 對해서는 原則적으로 再婚을 禁하면서 다만 나이어린 未亡人은 本人과 父母의 同意에 따라서 非公開裡에 再婚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여기에서 子女 없는 未亡인의 再婚만을 許容하는 것은, 子女가 있는 경우 家族의 解體에 따른 그 養育問題을 考慮한 것으로 解釋되며, 또 나이어린 未亡인의 再婚을 許容한 것은 人口問題에 對한 配慮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戰爭未亡人에 對해서 原則적으로 再婚을 禁止하고, 또 許容하는 경우에도 非公開의 再婚만을 許容하고 있는 데는 女子의 再婚을 否定的으로 보던 傳統的인 價值가 作用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北韓은 또 離婚에 關해서 56年에 「협의이혼절차를 폐지하고 재판에만 의하

(24) 조일호, 『조선가족법』, 1958, p. 61. 崔達坤, “北韓婚姻法研究”, 『北韓法律體系研究』, p. 94에서 再引用.

(25) 『北韓의 家庭과 婦女子』, 1972, .p. 120.

게하는 규정」을 制定하여 離婚權을 濫用하는 일이 없도록 國家的 統制를 한 층 強化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앞에서 본 離婚의 濟增과 그에 따르는 子女養育問題에 對한 對應策이기도 하지만, 體制의 立場에서 許容하는 離婚만이 成立됨을 意味한다. 「이혼재판의 사명은 이혼사건을 处理함에 있어서 혁명의 이익에 적합하게 견실한 부부관계와 가정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있다」⁽²⁶⁾ 고 한 것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한편 北韓은 戰爭에 依해서 發生한 數많은 孤兒를 為해서는 各道에 一個所씩 孤兒院을 設立하고 또 57年에는 黨決定으로서 道人民委員長級 以上은 孤兒를 1人以上 義務的으로 養育하도록 하는 措置를 取하고 있다.⁽²⁷⁾

이와 같이 北韓은 婚姻과 離婚을 크게 規制하고 또 孤兒入養制等에 依해서 家族의 安定을 追求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婚姻과 離婚의 無條件的인 自由라는 社會主義의 家族制度의 理念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것은 女性의 平等과 自由보다 家族과 體制의 安定을 "優先시키려는 政治的志向이 크게 作用한 結果이며 또 傳統的인 價值가 體制의 政治的인 目的을 為해서 利用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北韓의 그러한 家族의 安定化政策에는 家族自體의 그간의 發展 및 體制의 政治的志向 뿐만 아니라 그간의 社會經濟制度의 發展 및 다음 段階의 政策이 또한 直接的으로 크게 作用하였다. 北韓은 第1段階에서 土地改革을 實施하였으나 6·25事變으로 因하여 社會主義의 農業의 集團化를 本格的으로 推進하지 못하였다. 그러나가 休戰 다음해인 54年부터 農業集團化를 強力히 推進하여 58年에는 全農土와 全農民의 集團化를 完了하였다. 한편 商工業에 있어서도 46年부터 重要產業의 國有化가 推進되였으나 個人商工業의 廢止政策은 53年 休戰後부터 積極的으로 推進되어 역시 58년에 그 國有化가 完了되었다.⁽²⁸⁾ 이와 같이 第2段階는 農業의 集團화와 個人商工業의 廢止를 通하여 生產手段의 社會的財產에로의 轉換이 推進되던 時期이다. 그리하여 經濟制度에서 推進되고 있는 集團的인 生產制度에서는 女性勞動力의 効率的인 動員策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北韓은 53年 8月의 黨中央委第6次全員會議에서 採擇된 重工業優先政策에 의거하여 工場과 企業所에는

(26) 서창섭, “민사재판에서 계급성을 일층 제고시킨데 대하여,” 『민족사법』, 제9호, 1959, pp. 9-10. 崔達坤, 上揭論文, p. 182에서 再引用.

(27) 共產圈問題研究所, 上揭書, p. 31.

(28) 아시아反共聯盟, 『共產主義問題研究』, 第3卷, p. 161.

男子의 労動力を, 農村과 輕勞動에는 女性的 労動력을 動員하기 시작하여 60년에는 女性勞動力이 全體勞動力中에서 35%를 占하게 되었다.⁽²⁹⁾ 北韓은 이러한 女性勞動力의 動員을 為하여 54年부터 勞動者와 非勞動者에 對해서 差等의 適用하는 食糧配給制를 全面的으로 實施하고 또 家族中 한 사람의 賃金으로서는 生計를 維持할 수 없게 하는 低賃金政策도 採擇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勿論 女性勞動力의 動員을 為한 直接的인 手段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女性勞動力의 效率의 動員을 뒷받침하기 為해서는 무엇보다 家族의 安定化가 必要하였으며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婚姻과 離婚에 對한 規制의 強化는 바로 그러한 背景과 關聯이 있었던 것이다.

北韓은 또 이 時期에 社會的產業에 必要한 婦女勞動力의 確保를 뒷받침하기 為한 方便으로서 集團的인 子女養育制를 急速히 推進하고 있다. 그리하여 53年에 64個所에 不過했던 託兒所가 60年에는 7,626個所로, 그 收容兒童도 53年の 2,165名에서 60年에는 394,489名으로 增加하고 있다.⁽³⁰⁾ 斷片의 資料이기는 하지만, 54年에는 收容兒가 前年度에 比해서 190.8%, 增加하고 農村의 常設託兒所는 1,390個所이며, 非常設託兒所까지 合하면 7,246個所에 達했다고 하는 報告⁽³¹⁾가 그러한 增加趨勢를 잘 보여 주고 있다. 54年부터 集團養育制度가 ·이와 같이 急速度로 進展되기 시작한 것은 產業의 集團化와 그에 따른 女性勞動力의 動員이 本格的으로 推進되었던 事情과 關聯이 있음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것은 產業의 集團化가 推進되기 시작한 53年の 婦女勞動力의 比率이 26.0%였던 것이 60年에는 35.0%로 增加하고 있는 것과 比例해서 集團的인 養育制가 進展되고 있는데서 보다 直接的으로 立證되고 있다.

그러나 女性勞動力의 動員을 為해서 이처럼 不可避하게 또 急速하게 推進되고 있는 狀況에서 集團養育制度의 다른 하나의 目的으로서 「健全한 幼兒를 養育」한다는 것은 한갓 虛辭에 不過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60年代까지도 正規託兒所外에 소위 1日託兒所, 週託兒所, 보름託兒所, 月託兒所, 季節託兒所等이 設立되고 있는 것이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非常設託兒所는 처음부터 그目的이 「健全한 幼兒를 養育」하기 보다 勤勞女性의 「勞動生產性의 提高」에 있었으리라는 것이 너무도 自明하기 때문

(29) 『朝鮮その北と南』, 新日出版社, 1964. 國土統一院, 『北韓 總覽』에서 再引用.

(30) 『北韓全書』, 中卷, p. 189.

(31) 同書, p. 189.

이다.

以上 第2段階에서 北韓이 推進한 主要 政策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北韓의 婚姻과 離婚政策이 女性的平等權을 爲한 自由의 擴大보다도 家族과 體制의 安定을 追求하는 體制的立場에서 오히려 規制가 強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子女의 集團養育制의 擴大는 特히 經濟的인 進展과 關聯하여 推進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傳統的인 價值가 體制의 必要性과 關聯하여 利用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制度的인 政策과 社會經濟體制의 進展에 依해서 北韓家族의 機能과 構造에 어느 程度의 現實的인 變化가 進行되었을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첫째 家族의 財產이 社會的인 所有로 轉換됨으로써 家族이 經濟的인 生產機能을 中止하고 家族員이 個人인 基盤에서 社會的 經濟的 活動에 參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社會經濟的인 活動에의 個人的인 參與는 家族員 特히 女子와 年輕은 世代가 家族內에서 相對的으로 地位를 上昇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서 老人世代 特히 家長의 權威를 크게 弱化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는 北韓體制가 理念的으로追求하던 方向으로서 오히려 當然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다음 段階의 家族政策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V. 家族의 強化

第三段階는 家族의 強化期로서 60年代부터 시작하여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다. 50年代에 住民과 產業을 集團으로 묶는 集團化作業을 制度的으로 完了한 北韓社會에서 다음 段階의 目標는 그러한 社會經濟的인 進展을 바탕으로 經濟的인 生產과 社會主義의 人間의 生產의 効率性을 높여서 體制的인 統合을 強化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結局 効率的으로 經濟的 生產을 擴大하고 社會主義의 人間을 質的으로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이 이 段階의 主要課業이었다.⁽³²⁾ 온 人民의 「勞動階級化」, 「革命化」란 口號가 바로 그것을 反映하고

(32) 北韓에서 社會主義의 人間의 生產이 그 主要課題의 하나로 設定된 背景을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또理解할 수 있다. 즉, 61년에 그는 「理想的인 共產主義의 建設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고 自問하면서 「社會主義나 共產主義의 物質的 土臺」를 建設하는 것은 時間이 解決하지만, 「힘든 것은 사람들을 共產主義의으로 教養 改造하는 事業」이라고 自答하고 있다(金日成, 『청소년 사업에 대하여』, 1966, pp. 117-118).

있다. 「勞動階級化」란 經濟的 生產의 擴大를 為한 것이며, 革命化란 社會主義의 人間으로서의 質의 強化를 為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課業을 為한 經濟政策에 있어서는 前段階에 이룩한 制度의 集團화를 바탕으로 하는 7個年計劃(61~67年)과 그에 뒤따르는 一連의 經濟計劃으로 나타나고 政治政策에 있어서는 黨을 中心으로 하는 各種 組織生活의 強化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家族政策에 있어서는 經濟的生產의 增大 및 體制의 統合의 強化와 關聯하여 勞動力 特히 女性勞動力에 對한 需要에 應하고, 社會主義의 人間의 生產을 質으로 強化하는 것이 그 主要課題이며, 具體적으로는 社會의 子女養育 및 教育制度의 擴大, 家事의 社會的 產業化, 家庭의 革命化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에서는 經濟의 生產의 擴大에 應하기 為해서 60年代 以後 女性勞動力의 動員을 本格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全體勞動力에서 婦女勞動力이 占하는 比率이 60년의 35.0%에서 71년에는 半을 넘는 53.7%에 達하고 있는데서⁽³³⁾ 그러한 動員의 實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婦女勞動力의 動員을 뒷받침하기 為해서는 무엇보다도 子女의 社會의 養育制度의 擴大가 併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段階의 初期에 있어서는 그러한 養育制度로서 北韓이 指한 가장 基本的인 것은 託兒所制度이었다. 그리하여 託兒所數가 60년의 7,626에서 68년에는 18,592로 增加하고, 收容兒數는 같은 期間에 394,489에서 968,826으로 늘어났다.⁽³⁴⁾ 그러면서 幼稚園의 擴大에도 漸次 힘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한다. 幼稚園의 正確한 數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76년에는 託兒所와 幼稚園을 合한 數가 6萬餘個所에 이르고, 그러한 施設에 收容된 總 어린이數가 350萬에 達하고 있는데서⁽³⁵⁾ 그러한 努力의 一端을 읽을 수 있다.

北韓은 그에 그치지 않고 76年 6月부터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依해서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기로」(同法 제 2 條) 決定하고 있다. 이 法은 그러한 制度의 目的을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것」(同法第 6 條)으로 밝히고 있다. 그것은 49年에 託兒所 設立의

(33) 『世界共產圈總覽』, 1972年的 資料에 의거하였다.

(34) 『北韓全書』, 中卷, p. 189.

(35) 極東問題研究所, 『共產圈資料』, 1976. 4, p. 59.

目的을 「근로여성으로 하여금 근로생 산성을 제고시키고 또……전진한 유아를 양육시키는 데 방조」하는데 있는 것으로 천명한 것과比較하면 分明히 하나의 進展이라고 생각된다. 즉, 앞 段階에서는 女性的 労動力 動員을 爲한目的을一次的으로 밝히고, 또 二次的인目的도 「健全한 幼兒를 養育시키는데 방조」하는데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그것마저도 實質的으로 虛辭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보육교양법」에서는 女性的 労動力 動員을 爲한目的을 二次的으로 밝하고, 어린이를 爲한目的을一次的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그것도 「健全한 幼兒를 養育시키는데 방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적 새인간을 키우」는 것으로 表現하고 있다. 어린이를 爲한目的을一次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그 實質的인 運營이 어떠하든 間에 어느 程度의 社會經濟의 進展을 바탕으로 한 強한 意欲을反映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주체적인 새인간을 키운다는 것은 이제 단지健全한 幼兒을 養育하는데 방조하는 것이 아니고, 社會主義의 人間의 生產을 爲한 教育을 스스로 擔當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것을一次的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社會主義의 人間의 生產이 現段階에서 主要 目標로 設定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北韓이 72年에 段階의 義務教育의 實施를 發表하면서 人民學校 入學年齡을 만 7歳에서 6歳로 내리고 따라서 從來까지의 幼稚園 年齡인 4~6歳를 4~5歳로 내리고 또 學校前 1年間을 義務教育으로決定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政策의目標를反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社會主義의 人間의 生產을 爲한 教育에 있어서는 集團의 方法이 그 主要特性으로 되어 있다. 集團의 教育方法은 集團의 힘이 個人的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個人이 저절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集團에 服從하고 集團을 爲해서 戰爭하는 集團主義의 人間⁽³⁶⁾ 즉, 規格化된 人間을 生產하는데 有用한 方法이기 때문이다. 이제 託兒所 幼稚園을 準學校教育으로서 그러한 集團의 教育을 爲해서 使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³⁷⁾ 그리하여 60年代부터 集團의 子女養育制度의 擴大를 期하다가 76年부터는 그들이 말한 바와 같이 「莫大한 經濟的 負擔」에도 不拘하고 「國家와 社會의 負擔」으로 量的 質的으로 그

(36) 『金日成著作選集』(日文), 3, 1968, p. 45.

(37) 學校에서의 集團의 教育方法은 社會教育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子女들이 9歳부터 13歳까지 少年團에 加入하고, 14歳부터 27歳까지 社勞青에 加入하는 것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하에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은 北韓에서 集團主義의 人間의 生產을 爲한 教育의 主軸이 되고 있다.

制度의 劃期的인 進展을 決定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社會主義의 人間의 生產을 爲해서 한편 그러한 集團의 인 養育 및 教育制度의 強化를 推進하면서 다른 한편 家庭教育의 重要性도 強調하고 있다. 그에 關해서 61年에 金日成은 「가정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기초가 되고 사람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며 「가정에서는 학교나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교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演說하고 있다.⁽³⁸⁾ 60年代에 들어와서 子女教育에서의 家庭의 役割을 이렇게 強調하게 된 것은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에 依한 集團의 教育方法만으로서는 規格化된 社會主義의 人間을 生產하는 데 있어서 未洽하며, 教師, 指導者 및 同僚와 함께 父母가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認識이 그 背景을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에서도 그 初期에 있어서는 다른 社會主義社會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의 人間의 生產을 爲한 應急策으로서 既成世代에 對한 思想改造事業에 크게 依存하였으며, 家庭에 있어서는 어린이(學生)에 依한 父母의 逆教化方法을 利用하였다. 그러나 한 世代 가까이 지나면서 子女教育에서 家庭의 役割을 強調하게 되고 父母에 依한 어린이의 教化方式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것은 그 間의 既成世代에 對한 思想改造事業의 어느程度의 進展을反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 世代에 對한 教育이 集團의 方法만으로서는 不可能함을 認識한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훌륭한 공산주의건설자로 양성해 낼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³⁹⁾라고 어머니의 政治的 學習을 다그치고 있다. 이러한 背景에서 61年부터 「어머니學校」가 全國에 設置되기 시작하고, 68年 女盟會議에서는 「가정의 혁명화」가 重要한 課題로 提起되어, 70년부터 그것이 本格的으로 推進되고 있다.

「家庭의 革命化」란 社會主義의 人間의 產室로서 家庭의 社會主義教育을 強化함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父母를 通한 社會主義의 規範의 內面化를 強化함을 意味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父母의 權威를 強化하고 家族關係를 強化하는 것이 必須의이 되어야 한다. 71年の 女盟4次會議에서 金日成이 逸脫行

(38) 金日成,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1966, p.125.

(39) 同書, 같은 페이지.

爲를 하는 아이들에 對한 責任을 家庭 特히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家族強化策의 한面을 보여 주는 것이며, 72年에 改定된 「社會主義憲法」에서 「국가는 사회의 세로운 가정을 弘고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同憲法第36條)고 한 것은 北韓社會의 그러한 家族強化策을 憲法的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北韓의 家族強化策이 主로 社會主義의 人間의 產室로서 違行할 機能과 關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家族의 子女出產機能에 關해서는 이 段階에 와서 새로운 政策이 推進되고 있다. 말하자면 北韓은 이제 人間의 量的인 生產을 止揚하고 人口抑制政策을 쓰고 있다. 그것은 71年 社勞青 6次大會에서 婚姻年齡을 男子 32歲, 女子 27歲로 할 것을 提案하고⁽⁴⁰⁾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婚姻年齡에 關해서 金日成은 71年에 「녀자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시집을 가면 학습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정치생활에도 적극 참가하지 못합니다」고 說明하고 있다. 즉, 婚姻年齡을 늦추어서 勞動生產과 政治生活에 積極 參與시켜서 女子들을 勞動階級화, 革命化하자는 것으로 理解된다. 그러나 그 背後에는 또 人口成長과 經濟成長間의 不均衡이 重要한 理由로 깔려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에서는 人間의 生產과 關聯된 家族의 機能에 關해서 이제 그 量的인 生產을 止揚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質的인 生產을 強調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體制的立場에서 婚姻에 또 다른 規制를 加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다.

이 段階에서 北韓이 家族과 關聯하여 取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措置는 所謂「家庭의 技術革命」政策이다. 北韓이 女性勞動力의 動員에 그 全力を 다하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動員을 効率의 으로 뒷받침하기 爲해서는 子女養育 및 教育의 社會化와 함께 併行되어야 할 家事의 社會的 產業化는 70年代에 들어서기까지 큰 進展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1年에 金日成이 「사회에 진출한 女性들의 労働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료공업을 발전시켜 女性들이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수 있게 하고, 웃공장과 세탁소를 짓고, 여러가지 부엌세간을 생산공급하며 가정일을 경감하고 농촌수도화로 女性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⁴¹⁾고 한 데서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71年的 黨5次大會에서 「3

(40) 『北韓全書』, 中卷, p. 214. 歸順者の 證言에 의하면 男子 31歲, 女子 28歲로 制限되고 있다고 한다(76年, 10月 30日字 東亞日報 7面 記事).

(41) 『金日成著作選集』(日文), 6, 1974, pp. 44-45.

「大技術革命」⁽⁴²⁾의 하나로 「가정으로부터 女性的 解放」을 爲하여 「家庭의 技術革命」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家庭의 技術革命」이 무엇을 意味하는가는 앞의 金日成의 이야기에서 또 알 수 있다. 즉 「食料工業을 發展」시키고 「웃工場과 세탁소를 짓고」, 「여러가지 부엌세 간을 生產供給하며」「農村水道化」를 하는 것 等이다. 따라서 그 「家庭의 技術革命」이라는 것이 婦女勞動力의 動員을 爲해서 不可避한 家事의 初步的인 產業化措置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은 女性勞動力의 効率의 動員을 爲해서 家事의 社會的 產業化를 爲한 勞力を 그 뒤에도 繼續하고 있다. 77年부터 시작되는 「人民經濟第2次 7個年計劃」을 發表하면서 金日성이 한 演說內容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중공업지구와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을 강화하고 특히 가공식품과 문화용품, 가정용품 및 각종잡화의 판매량을 급속하게 증대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상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편의를 극력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⁴³⁾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加工食品, 文化用品, 家庭用品 및 各種雜貨」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正確하게 모르지만 軍事的, 經濟的 힘을 追求하고 있는 北韓의 政策에 비추어 보아서 그 내용과 質을大概 짐작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商品의 「販賣量」을 增大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特히 都市를 除外한 「重工業地區와 農村」에서는 大部分의 傳統의 家事が 如前히 家庭의 負擔으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家事의 社會的 產業化는 아직 初步的 段階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 第3段階에서 北韓이 家族과 關聯해서 推進하고 있는 主要政策으로서 子女養育 및 教育의 社會化, 家事의 社會的 產業化 및 家庭의 革命化 등을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家庭의 革命化政策을 通해서 이 段階의 北韓家族政策의主流가 家族의 強化에 있음을 理解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子女養育 및 教育의 社會化의 劃期的 强化는 열핏 이러한 强化政策과相反되는 것으로 理解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社會主義의인 人間의 生產이라는 보다 높은 次元의 目標와 關聯하여 오히려 家族強化政策과 서로 补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段階의 子女養育 및 教育의 社會化, 家事의 社會的 產業化, 家庭의 革命化 및 結婚年齡의 延

(42) 「3大技術革命」이란 「輕勞動과 重勞動의 差異」, 「都市勞動과 農村勞動의 差異」를 줄이고 「가정으로부터의 女性的 解放」을 말한다.

(43) 『金日成著作選集』(日文), 7, 1978, p. 458.

期等에서 北韓家族政策은 그 社會經濟的인 進展狀況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음을 더욱 明白하게 理解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VII. 結 語

위에서 우리는 家族과 關聯된 政策을 中心으로 하여 主로 北韓家族의 制度의 變遷을 살펴보았다. 北韓家族制度는 大體로 變革, 安定化, 強化를 特徵으로 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段階의 政策은 基本的으로 社會主義的인 家族의 概念에 그 바탕을 두면서도 家族自體의 發展과 함께 社會經濟的인 進展狀況과 關聯하여 그 內容과 方向이 決定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決定에는 傳統的인 規範과 價值가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 研究를 맷으면서 우리의 傳統的인 家族制度와 關聯된 重要한 側面을 이루면서도 위에서 論해지지 않았던 두 가지 側面 즉, 親族制度와 同本不婚制에 關해서 살펴본 다음, 北韓家族의 現實的인 變化의 方向을 論理的으로 推論해 보고자 한다.

北韓에서는 家族과는 區別되는 親族에 該當되는 것을 「친척」으로 부르고 있다. 즉, 「결혼과 핏줄에 기초하여 가깝게 연결되고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단」을 「家族」이라 하고 「혈연관계가 비교적 먼 사람들의 집단」을 親戚이라고 부르면서 家族과 區分하고 있다. 傳統적으로 内親 즉, 父系血族을 親族이라 하고, 外親 즉 父系以外의 血族이나 婚姻에 依해서 맺어진 사람들을 戚屬이라 하며, 또 그 兩者를 合하여 親戚이라고 부르는 慣行이 있었다. 그런 意味에서 北韓의 「친척」이라는 用語는 傳統的인 用例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北韓에서는 어디까지나 핏줄에 의해서 연결된 사람들만을 「친척」이라 부르고 婚姻에 依해서 연결된 사람들을 除外하고 있는 것이 그 特色이다.

어쨌든 北韓에서 親族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例를 볼 수 없으며, 우리가 日常的으로 쓰는 親族에 該當하는 用語로서는 「親戚」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法的으로는 그 親戚의 範圍를 밝히는 어떠한 規定도 또한 없으며, 「近親者」라는 用語가 쓰여지고 그 範圍를 밝히고 있음으로 그에 依해서 親戚의 範圍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北韓의 刑訴法 第41條에 被告人の 辯護인이 될 수 없는 缺格者로서 「近親者」를 들고 同法 本文에 「本法에 있어 <近親

者〉라 함은 配偶者, 父母, 兄弟姊妹를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⁴⁴⁾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扶養義務에 있어서는 이들 外에 祖父母, 孫子女間에도 一定한 相互 扶養義務關係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한 義務關係는 親祖孫間에 뿐아니라 外祖孫間에도 다같이 適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兩系의 親族間에 特定한 義務關係를 規定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家族成員으로 包含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間에 家族關係가 아닌 親戚關係를 法的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法的인 規定外에 한편 「백과사전」에서는 家族을 構成할 수 있는 範圍를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등 칙계혈족은 물론, 같은 선조에서 출생한 방계혈족들(형제자매, 숙부와 조카등)도」 云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일호도 叔姪間의 扶養義務關係를 認定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叔父와 조카까지도 現實的으로는 親戚關係를 認定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일호는 扶養義務關係를 이야기하면서 또 從祖父母와 從孫子女間에도 그것이 認定되고 있는 것으로 解釋하고, 또 媳父母와 妾子女間, 妻父母와 사위間에도 法的으로 認定되고 있지 않은 扶養義務關係를 認定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主張하고 있다.⁽⁴⁵⁾ 따라서 이들 사이에도 現實的으로는 親戚關係가 認定되고 있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以上 論한 것을 다시 整理하여 보면 法的으로는 配偶者, 父母, 子女, 兄弟姊妹, 祖父母, 孫子女만을 近親集團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이러한 法的 規定에서 몇 가지가 우리의 注意를 끈다. 첫째 北韓은 그들이 家族을 構成할 수 있는 範圍에 包含시킨 叔姪까지도 近親者에서 除外함으로서 近親者의 範圍를 極端으로 좁게 限定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파주의의 根源으로서 家族主義, 門閥主義를 排擊하는 北韓의 立場에서 그 門閥主義의 基盤이 되는 넓은 親戚關係를 破壞하기 為해서 戶籍制를 廢止한 政策과 그것은 一貫性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結局 北韓은 家族關係의 範圍를 넘어서 親戚關係를 公式的으로 認定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媳父母와 妾子女間, 妻父母와 사위間의 親戚關係를 公式的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配偶者關係 以外에는 어디까지나 血緣을 親

(44) 김성원, “北韓의 教育 및 家族政策 (IV)”, 『北韓』, 1980. 12, p. 180.

(45) 朴秉豪, 上揭論文, p. 62.

戚關係를 形成하는 契機로 보고자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家族關係를 어디까지나 社會的關係로 보려는 그들의 立場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그러면서도 祖孫間의 扶養義務關係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兩系에 親戚關係를 認定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兩性의 平等이라는 理念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傳統的 制度에서는 하나의 價值로 여기던 것을 法의 으로 規定함으로서 여기서는 親戚關係를 오히려 擴大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公式的인 政策에도 不拘하고 實際의으로 叔姪, 從祖孫, 媳父母와 妾父母, 妻父母와 사위에 對해서도 特別한 親戚關係가 擴大, 認定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從祖孫과 같은 寸數인 四寸에 對해서는 言及한 것이 없지만 叔姪, 從祖孫에 對한 그들의 態度로 미루어 보아서 實際의으로는 親戚關係가 通用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傳統的 制度에서와 같은 넓은 親族關係는 이러한 政策뿐 아니라 그 急激한 社會的 地理的 移動과 함께 急速하게 崩壞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⁴⁶⁾ 그렇지만 實際의으로 通用되고 있는 親族制度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親族制度의 變化에는 政策만이 作用하는 것이 아니고 傳統的인 規範과 價值가 함께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傳統의 作用을 다음에 考察할 親族間의 婚姻制에서 우리는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다. 北韓의 親族間의 婚姻에 關한 어떤 規定도 現在까지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그에 關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端緒는 다음과 같은 조 일호의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금지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을 기대케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민들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생활풍습과 감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이 각도에서 볼 때 아마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입법에 있어서 보다는 우리에게 그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⁴⁷⁾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同書에서 6寸을 넘으면 通婚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勿論立法을 위한 한個人의 提案이 되지만 家族法學者로서의 그의 位置에 비추어서, 北韓體制의 近親者 禁婚範圍에 關한 態度를 엿볼수 있는 資料로 생각된다. 여기에 가장 눈

(46) 조일호는 그의 著書에서 「舊慣習上의 本家有服親과 外家有服親, 妻家有服親의 名稱」을 羅列하고, 日常呼稱을 붙이고 있기는 하나 그것들은 參考의으로 記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朴秉濂, 上揭書, p. 25 參照).

(47) 조일호, 上揭書, p. 152. 崔達坤, 上揭書, p. 127에서 再引用.

에 뜨이는 것은 「우리 인민들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생활풍습과 감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야」 云云하고, 「다른 어느 사회주의 국가들의 입법에서보다는 우리에게 그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한 대목이다. 그것은 바로 傳統的인 우리의 同姓不婚制를 意識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廣範한 親族關係를 認定하지 않으려는 北韓의 立場에서는 그들이 法的으로 規定한 親族範圍 밖에서는 婚姻을 許容하는 것이 論理의이다. 그런데 그는 6寸까지 近親間禁婚의 範圍로서 提案함으로서 우리와 文化的傳統을 거의 같이하고 있는 中共에서 傍系五等親까지를 禁婚範圍로 制限하고⁽⁴⁸⁾ 있는 것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 그것은 分明히 우리의 傳統의 同姓不婚制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또 北韓이 公式的으로 近親間의 禁婚範圍에 關해서 어떤 規定을 實際로 制定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強한 傳統的價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狀況下에서 그들의 論理를 貫徹할 수도 없고 또 論理와 상치하는 傳統을 받아드릴 수도 없는 處地에서 公式的인 決定을 留保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現實的으로 北韓住民 特히 老壯年世代 사이에는 近親婚 禁忌라는 價値가 強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親族關係를 否定하려는 北韓當局의 態度와 關聯하여 本貫과 血族關係의 記載를 要求하지 않는 公民證制度 및 地理的 移動等에 依해서 近親禁婚의 範圍는 漸次 좁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家族制度는 現實的으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 것인가를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 指摘하였지만 北韓家族制度의 現實的인 變化에 關해서 正確한 直接的인 資料를 우리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論理의 으로 그에 關해서 몇가지 推論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推論이기 때문에 그러한 論理를 展開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取한 基本的立場을 미리 밝혀 둘 必要가 있을 것 같다. 즉, 우리 家族과 같이 그 傳統이 오래되고 또 强하며 사람들의 거의 모든 日常的인 活動과 關聯되어 있는 制度의 變化는 體制의 公式的인 政策에 依해서만 영향을 받고 進行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것들과 함께 全般的인 社會經濟의in 狀況의 變化에 對한 適應으로서 進展되며, 또 그러한 進展에는 傳統의in 價値와 規範이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立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

(48)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 第5條 第1項.

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主義의 理念에 따라서 推進하고 있는 北韓의 家族政策과 家族財產의 社會化 및 그에 따르는 產業化, 6·25戰爭, 體制의 統合을 為한 政治的 抑壓等과 같은 社會經濟의 壓力의 複合的인 영향에 依해서 傳統的인 家族의 理念과 制度가 크게 衰退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具體적으로는 北韓家族政策이 追求하는 方向으로서 家族機能의 縮少와 變質이 家族關係에서의 女子의 地位의 어느 程度의 上昇, 家族構成에 있어 서의 兄弟間의 早期分家等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變化에도 不拘하고 둘째로 家族紐帶는 크게 弱化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 家族의 強化가 北韓의 政策이기도 하지만 그것 보다도 外部의 壓力 즉, 政治의 干涉, 經濟의 生產을 為한 壓力 및 生活의 窮乏化等은 도리히 家族關係에서의 緊張의 縮少를 要求하고 家族內의 團結을 促進할 것이기 때문이다. 特히 生活의 窮乏化는 經濟의 協同體로서 家族成員의 相互依存關係를 더욱 强化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소련과 中共家族에 關한 研究結果가 그 예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⁴⁹⁾ 셋째, 家族關係에서의 女子의 어느 程度의 地位의 上昇에도 不拘하고 男系와 家父長의 優位의 地位는 如前히 持續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體制의 安定이라는 立場에서 政策의 次元에서도 社會主義의 理念과는 달리 女性의 平等과 自由가 制約되고 있음을 이미 보았다. 그뿐 아니라 家族에서의 男子를 中心으로 하는 權威主義의 關係는 오랜 뿌리깊은 傳統이며 그 것은 또 權威主義의 北韓의 政治體制와도 一致되고 있기 때문이다. 家庭에서의 男子優位의 地位에 關해서는 61年에 金日成이 「어떤 사람들은 부인이 아들을 못낳는다고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큰 문제로 될 수 있겠는가?」⁽⁵⁰⁾ 고 한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아들에 對한 選好思想과 함께 아들이 없을 경우에 男子가 離婚을 提起하는 것이一般的의이라는 것을 反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男子優位의 地位와 關聯하여 傳統의 家事는 如前히 女子의 負擔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우리의 強한 傳統의 영향에 비추어 본 단순한 推論이 아니라 北韓과 같은 理念下에서 社會主義의 變革을 二世代間 推進하고 있는 소련에서 아

(49) 소련에 關해서는 G.W. Lapidus, *Women in Soviet Society*, 1978을, 또 中共에 關해서는 W. Parish and M. Whyte, *Vill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China*, 1978 參照.

(50) 金日成,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1966, p. 124.

직까지 家庭內의 性的 分業이 바뀌고 있는 傾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⁵¹⁾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軍事的 經濟的 힘을 追求함으로 日常的인 「써비스」가 회생 當하면서 家庭外의 婦女의 勞動이 強하게 要求되고 있는 狀況에서 傳統的인 家事外에 労動에 따르는 追加負擔을 女子가 거의 專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家族員의 欲求充足이라는 傳統的 價值의 영향下에 그러한 二重的負擔을 크게 意識하지 않고 女子가 遂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假說들은 뒷날 보다 確實한 資料의 뒷받침에 依해서 補完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51) W. Parish and M. Whyte, *op. cit.*, p. 247.